



제438회국회(임시회)
제2차 국방위원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민간인통제선 범위 축소 〉

■ 이양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178호)

2026. 8.

국 방 위 원 회

전 문 위 원 문 성 환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 참고자료	
1. 국방부 보도자료 주요내용	6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양수 의원 등 10인
2. 발의연월일 : 2026. 4. 8.
3. 회부연월일 : 2026. 4. 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민간인통제선은 군사분계선 이남 10킬로미터 범위 이내에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현재 실질적인 민간통제선은 전 휴전선에서 가장 근접한 곳은 200미터까지 단축되어 있으나, 일부 민간통제선의 경우 해당 범위가 지나치게 넓게 설정되어 있어 접경지역 주민들의 토지 이용과 생활권에 제약이 크며, 지역 개발과 관광 자원 활용에도 장애 요인으로 작용해 왔음.

또한 주민생활권이 확대되고 군사작전 개념도 달라졌기에 국가안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민통선 북상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 되어 왔음.

이에 민간인통제선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접경지역의 균형발전과 군의 효율적 작전환경 조성을 위하여 조정하는 것임(안 제5조).

Ⅲ. 검토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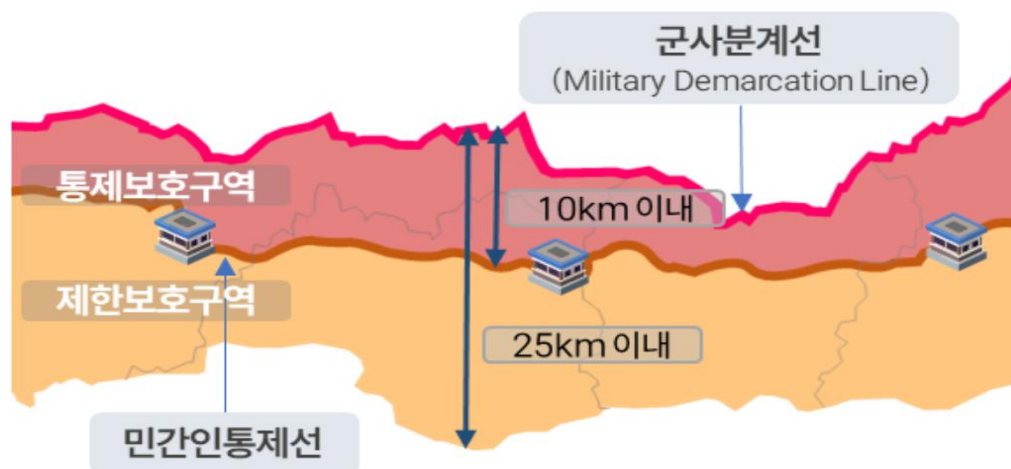
- 개정안은 민간인통제선의 지정범위를 현행 군사분계선 이남 10킬로미터 이내에서 군사분계선 이남 3킬로미터 이내로 축소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의 지정범위 등) ① (생략)	제5조(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의 지정범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민간인통제선은 군사분계선의 이남 <u>10킬로미터 범위</u> 이내에서 지정할 수 있다.	②----- - <u>3킬로미터 범위</u> ----- -----.
③ · ④ (생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 ‘민간인통제선’이란 고도의 군사활동 보장이 요구되는 군사분계선의 인접지역에서 군사작전상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선을 말함(법 제2조제7호).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범위]



- 현행법은 군사분계선¹⁾ 이남(以南) 10km의 범위 이내에서 민간인 통제선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민간인통제선의 이북(以北) 지역은 ‘통제보호구역’으로, 군사분계선 이남 25km 범위 이내의 지역 중 민간인통제선 이남지역은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음.²⁾

실제 민간인통제선은 아래 표와 같이 군사분계선 이남(以南) 10km 범위 내에서 지역별로 달리 지정되어 있음.

[지역별 민간인통제선 현황]

강화·김포	파주	연천	철원	화천	양구	고성
1~3km	1.5~10km	3.5~7km	3~9km	7~10km	5.5~10km	7.5~10km

- 2007년 동법 제정³⁾ 당시 민간인통제선의 지정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는 논란이 있어, 민간인통제선 지정범위를 군사분계선으로부터 15km 이내⁴⁾(당시 「군사시설보호법」)에서 10km 이내로 축소

1) 전쟁, 또는 교전 당사국 사이에서 군사적 행동의 경계선으로 삼은 선. 한반도에서는 1953년 7월 27일 발효된 정전 협정에 따라 해당 시점에 교전이 멈춘 지점을 군사분계선으로 설정하고, 임진강에서 동해안까지 약 240km 거리를 군사분계선으로 설정하였음. 휴전선이라고도 함.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5조(보호구역 및 민간인통제선의 지정범위 등) ① 보호구역의 지정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제보호구역

가. 민간인통제선 이북(以北)지역. 다만, 통일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지역, 취약지역 또는 안보관광 지역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2. 제한보호구역

가. 군사분계선의 이남(以南) 25킬로미터 범위 이내의 지역 중 민간인통제선 이남지역. 다만, 중요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이 없거나 군사작전상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한보호구역의 지정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안」(의안번호 제176289호, 정부 제출, 2007. 3. 27.)은 작전환경 변화 및 원활한 작전운용을 위해서 보호구역의 범위와 행위규제 등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법률 재정비 필요성이 제기되어 군사시설보호 관련 법률인 「군사시설보호법」, 「해군기지법」, 「군용항공기지법」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으로 통합하여 발의, 2007. 12. 21. 공포되었음.

4) 군사분계선 인접지역에서 통제보호구역의 설정기준이 되는 민간인 통제선은 '81년도에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남방 20km 이내로 설정된 이후 '97년도에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으로 15km 이내로 축소 조정하였음.

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제정함으로써 보호구역 내의 토지이용 확대와 주민 편익의 증진을 도모하였음.

[통제보호구역 지정 기준 연혁⁵⁾(군사분계선 이남 거리)]

구 분	'72년	'81년	'97년	'07년
통제보호구역 (민간인통제선)	27km 이내	20km 이내	15km 이내	10km 이내

□ 그런데 민간인통제선이 10km 이내로 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규제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건축물 신축 금지 및 복잡한 출입 절차 등 여전히 생활에 제약을 받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민간인 통제선의 범위를 축소함으로써 주민 편익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 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 이러한 민간인통제선 완화 요구의 배경에는 주민의 재산권 보장과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요청뿐 아니라, 최근 군사기술의 발달로 넓은 지역을 일률적으로 통제하지 않고도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해졌다는 군사작전 여건의 변화도 자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민간인통제선 조정 문제는 접경지역 주민의 재산권 보장 및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과 군사작전 등 국방·안보적 측면을 균형 있게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문제라 하겠음.

5) 1972.12.26. 「군사시설보호법」 제정. 군사시설 보호구역(휴전선으로부터 27km) 설정
1981.12.31. 「군사시설보호법」 개정(최초). 민통선 범위(휴전선 남방 5km~20km) 설정
1997.1.13. 「군사시설보호법」 개정(1차 변경). 민통선 군사분계선 남방 20km→15km 설정
2007.12.2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정(2차 변경). 민통선 군사분계선 남방 15km→10km 설정

이와 관련하여 국방부는 2026년 6월 ‘군사시설 규제개선 정책’ 발표를 통해 지역별로 지형여건과 작전계획 등을 고려하여 민간인 통제선을 군사분계선으로부터 평균 6km 수준으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 바 있음.⁶⁾

이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3km를 벗어나는 상당수 지역이 민간인 통제선에 묶여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함. 따라서 민간인통제선의 범위를 조정함에 있어서는 일시에 3km 이내로 북상시키기보다는, 현행 틀 내에서 6km 수준으로 조정한 후 여건을 보아가며 재조정하는 단계적인 방식이 보다 적합할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309

6) 참고자료 1 참조

※ 참고자료

1. 국방부 보도자료 주요내용

(국방부 군사시설 규제개선 정책 발표, 2026. 6. 17.)

① 작전수행여건을 보장하는 가운데 민간인통제선을 조정

- 민통선은 군사활동 보장을 위해 민간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선이지만 실질적인 통제수단의 보완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음.
- 이에 실질적인 통제대책을 강구하여 민통선 내 작전수행여건을 보장하고, 병역자원 감소라는 미래 안보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민통선 조정방안을 마련했음.
- 지역별로 지형여건과 작전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민통선을 군사분계선으로부터 평균 6km정도로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약 여의도 90배 면적의 통제보호구역이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됨.
- 민통초소 이전, 경계펜스와 CCTV 설치 등의 통제수단을 보완하여 '27년부터 단계적으로 민통선을 조정하겠음.
- 민통선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은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 차원에서 국방예산을 투입하겠으며, 민통선의 효율적인 설치·유지·운영을 위해 지방정부와 협업해 나가겠음.

② 필요최소 원칙에 따라 군사분계선 이남 제한보호구역을 최적화

- ‘필요최소’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군사작전상 중요성이 작은 지역까지 포함하여 일괄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군사분계선 이남 제한보호구역 지정기준을 개선하여, 군부대의 작전성 검토 및 관리 소요를 최소화하고 군사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지역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겠음.
- 군사기지 및 시설별로 필요한 보호거리를 검토하고, 최신 무기체계 등 실제 작전요소를 고려하여 보호구역 범위를 최적화했으며, 그 결과 약 여의도 150배 면적의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올해 하반기부터 부대별 작전성 검토와 지형측량을 통해 준비가 완료된 곳부터 순차적으로 보호구역을 해제해 나가겠음.
- 다만 민통선 조정과 보호구역 해제 면적은 지도상에서 판단한 수치로, 실제 지형측량과 작전부대별 검토과정에서 변동 가능하며, 향후 작전환경의 변화에 따라 다시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음.